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071
------	------

2024. 9.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9.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이회승)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3) 필 요 성 :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 4) 사무내용
 - 음악연주활동 및 연주자 육성사업
 - 음악·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 국내·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나.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기관 개요

- 1)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 2) 규 모 : 건물 2,043.58㎡
- 3) 소요예산 : 22,587백만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1)에 따른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서울시립교향악단 현황

-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음.

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은 1본부 5팀 및 교향악단으로 구성되어 136명의 정규인력을 갖추고 있으며(2024.8.9. 기준), 별도의 운영 시설은 없음.

< 인력 현황 >

구 분	총원	대표이사	음악감독	공연기획자문역	상임작곡가
정 원	4	1	1	1	1
현 원	2	1	1	-	-
과부족	△2	-	-	△1	△1

- 경영본부

구 분	총원	본부장	팀 장	팀 원	행정지원직
정 원	37	1	6	26	4
현 원	35	-	6	25	4
과부족	△2	△1	-	△1	-

- 교향악단

구 분	총원	수석 부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부악장	제1수석	제2수석	부수석	차석	단원	악기악보 위원
정 원	123	1	1	2	1	14	4	14	6	76	4
현 원	99	1	1	-	2	10		12		69	4
과부족	△24	-	-	△2	1	△8		△8		△7	-

다. 출연 규모의 적정성

-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각종 공연사업과 교육, 음반발매, 협찬, 후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28.4% 증액된 225억 8천 7백만원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최근 5개년간 출연금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총예산	20,842,585	21,502,692	22,698,150	25,053,972	28,440,040
출연금	14,204,852	14,841,714	15,432,486	17,595,054	22,587,358
자주재원 비율	31.8%	31.0%	32.0%	29.8%	20.6%

※ 전기이월액 및 수탁사업비 제외

- 최근 5개년간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편성 현황에 따르면, 이번 2025년 편성안은 사업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출연금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기관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율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음.

1) 수입예산

-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수입예산안 총액은 284억 4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8천 6백만원(13.5%) 증액되었고, 이 중 출연금은 225억 8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9억 9천 2백만원(28.4%)이 증액되었음.

< 2025년도 수입예산안 >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액	증감률
계	25,053,972	28,440,040	3,386,068	13.5%
출연금	17,595,054	22,587,358	4,992,304	28.4%
자주재원	5,488,492	5,752,682	264,190	4.8%
공연사업	2,767,742	3,019,082	251,340	9.1%
일반사업	2,720,750	2,733,600	12,850	0.5%
순세계잉여금	1,970,426	100,000	△1,870,426	△94.9%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19억 7천만원 대비 5.1%에 불과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년('19~'23년 평균 34.7%)에 비해 2024년 상반기 집행률(43.7%)이 매우 높고, ▶ 인건비 등 예산편성 시 실제 환율보다 훨씬 낮은 서울시 정책 환율을 적용하면서 잉여금 지출이 증가되어 순세계잉여금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2) 지출예산

- 지출예산 총액은 284억 4천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80억 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천만원(9.0%)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99억 9천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1천 1백만원(15.0%) 증액되었음.

< 2025년도 지출예산안 >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액	증감률
계	25,053,972	28,440,040	3,386,068	13.5%
사업비	7,349,427	8,009,674	660,247	9.0%
공연사업	5,801,889	6,256,190	454,301	7.8%
일반사업	1,547,538	1,753,484	205,946	13.3%
행정운영경비	17,381,847	19,993,101	2,611,254	15.0%
인건비	14,385,426	16,689,100	2,303,674	16.0%
관리비	2,717,053	2,976,797	259,744	9.6%
시설비	279,368	327,204	47,836	17.1%
예비비	322,698	437,265	114,566	35.5%

- 지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 증액 사업은 ▶음악감독 여비 2억 7백만원(84.7%), ▶사회보험 부담금 3억 8천 8백만원(44.1%), ▶순회공연 8억 8천 5백만원

(147.8%), ▶음반사업 1억 6천 4백만원(320.0%), ▶기본급여 3억 6천 2백만원(4.0%)임.

- 감액사업은 ▶정기공연 감 3억 1천 7백만원(△11.1%), ▶기업공연 감 4천 7백만원(△68.7%)임.

3) 주요 증액 사업

< 2025년도 지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24년	2025년	증감액	증감률
순회공연	598,686	1,483,812	885,126	147.8%
음반사업	51,092	214,600	163,508	320.0%
인건비	14,385,426	16,689,100	2,303,674	16.0%
사무관리비	332,050	471,496	139,446	42.0%
여비	308,653	570,203	261,550	84.7%
연금부담금등	879,776	1,268,096	388,320	44.1%

○ “순회공연”은 2024년도에는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의 초청을 받아 예산이 거의 소요되지 않은 데에 반해 2025년에는 미국 중동부 (앤 아버, 뉴욕, 스틸워터) 지역에 방문 공연 예정임에 따라 8억 8천 5백만원(147.8%)이 증액되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2024년 제6차(8월) 투자심사에서 ‘숙박비 2인 1실 반영 등 사업비 긴축 필요’ 등 조건부 추진 결과를 받아 사업비 축소가 예상됨.

< '순회공연' 관련 투자심사 결과 >

사 업 명	1. 2025년 서울시향 해외 순회공연
부 서 명	문화정책과
심 사 결 과 및 내 용	[조건부 추진] ○ 현지인 관람 비중 및 공연 만족도 등 구체적인 성과분석 필요 ○ 숙박비 2인 1실 반영 등 사업비 긴축 필요
사 업 비	1,483백만원 (전액 시비)

- “음반사업”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전곡(10곡) 녹음 계획을 발표한 츠베덴 음악감독의 의지에 따라 2025년 2곡(2번, 7번)의 음반작업을 위해 1억 6천 4백만원(320.0%)이 증액되었음.
- “인건비”는 일반 인건비와 퇴직급여·평가급을 합친 금액으로 임금 인상률(3.9%)에 따른 자연 인상분에 더하여 츠베덴 감독이 2025년 (계약 2년차)부터 최소 12주(1년차 8주) 이상을 서울시에 머물 예정임에 따른 보수 지급액 증가, 경영평가 개선 전망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년대비 23억 4백만원(16.0%)이 증가하였음.
- “사무관리비”는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지침²⁾에 따라 직무 중심 인사관리 보수체계 개편의 단계별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1억 3천 9백만원(42.0%)이 증액 편성되었음.
- “연금부담금등”은 2024년도 사회보험부담금 중 일부가 과소추계되었던 것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채용인원 증가로 인한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면서 3억 8천 8백만원(44.1%)이 증가했음.

2)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7p, 「2025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4p~32p

4) 주요 감액 사업

< 2025년도 지출예산 중 주요 감액사업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24년	2025년	증감액	증감률
정기공연	2,848,869	2,531,716	△317,153	△11.1%
기업공연	68,129	21,307	△46,822	△68.7%
평가급	536,532	-	△536,532	△100.0%

- “정기공연” 및 “기업공연”은 압 판 츠베덴 음악감독의 서울 체류 기간(12주 이상)이 늘어나면서 공연 별로 편성되어있던 외부 지휘 료가 감소하여 각각 3억 1천 7백만원(△11.1%), 4천 7백만원(△ 68.7%) 감액 편성됨.
- “평가급”은 회계상 전액 감액된 것처럼 나타나지만, 당초 ‘관리비’ 단위사업에 속하던 항목이 ‘인건비’에 편입된 것으로, 인건비 내 에서 7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되어 사실상 2억 5천 7백만원(47.8%) 증가한 것임.

< 2025년도 지출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액 (B-A)	증감률 (B/A)
사업비 계	25,053,972	28,440,040	3,386,068	13.5%
문화도시 서울구현	7,349,427	8,009,674	660,247	9.0%
공연사업비	5,801,889	6,256,190	454,301	7.8%
정기공연	2,848,869	2,531,716	△317,153	△11.1%
시민공연	1,466,110	1,397,915	△68,195	△4.7%
순회공연	598,686	1,483,812	885,126	147.8%
외부출연	175,744	148,352	△27,392	△15.6%
기업공연	68,129	21,307	△46,822	△68.7%
대관료	644,351	673,088	28,737	4.5%
일반사업비	1,547,538	1,753,484	205,946	13.3%
교육사업	160,625	225,876	65,251	40.6%
음반사업	51,092	214,600	163,508	320.0%

구분		2024년 (A)	2025년 (B)	증감액 (B-A)	증감률 (B/A)
	협찬사업	50,000	50,000	-	-
	후원사업	34,900	34,900	-	-
	기부금사업	56,934	119,000	62,066	109.0%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275,000	278,000	3,000	1.1%
	월간지 발매	186,540	188,760	2,220	1.2%
	디자인 제작	50,000	60,000	10,000	20.0%
	티켓구매자 관리	17,740	17,740	-	-
	단원 및 부지휘자 모집	249,297	192,369	△56,928	△22.8%
	단원트레이닝	10,808	10,830	22	0.2%
	전산사업	404,602	361,409	△43,193	△10.7%
행정운영경비		17,381,847	19,993,101	2,611,254	15.0%
인건비		14,385,426	16,689,100	2,303,674	16.0%
	급여	14,385,426	16,689,100	2,303,674	16.0%
관리비		2,717,053	2,976,797	259,744	9.6%
	사무관리비	332,050	471,496	139,446	42.0%
	공공운영비	147,252	181,614	34,362	23.3%
	행사운영비	101,682	60,300	△41,382	△40.7%
	복리후생비	245,000	248,420	3,420	1.4%
	여비	308,653	570,203	261,550	84.7%
	업무추진비	35,600	35,580	△20	△0.1%
	직무수행비	60,800	60,800	-	-
	교육훈련비	31,688	41,488	9,800	30.9%
	관서업무비	30,020	30,300	280	0.9%
	평가급	536,532	-	△536,532	△100.0%
	포상급	8,000	8,500	500	6.3%
	연금부담금 등	879,776	1,268,096	388,320	44.1%
시설비		279,368	327,204	47,836	17.1%
	자산취득비	39,500	37,500	△2,000	△5.1%
	수선유지교체비	95,868	132,304	36,436	38.0%
	위탁관리비	144,000	157,400	13,400	9.3%
예비비		322,698	437,265	114,566	35.5%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071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3) 필 요 성 :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 4) 사무내용
 - 음악연주활동 및 연주자 육성사업
 - 음악·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 국내·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나.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기관 개요

-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 2) 규모 : 건물 2,043.58m²
- 3) 소요예산 : 22,587백만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강민지 (☎ 2133-2527)